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의안 번호	1926
----------	------

제출년월일 : 2024년 5월 27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서울특별시 도시재생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2023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 회수 금액이 당초 편성 대비 7,949백만원 증가함에 따라

나. 예치금 회수액을 반영하여 2024년 지출계획상 여유자금 예치금을 38,128백만원으로 최종 변경하고자 함

다.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용

- 2024년 수입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1차 변경 ※ 변경없음	2차 변경 (B)	증감(B-A) (증감률)
합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11%)
경상적세외수입	1,447	1,447	1,607	160
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공공예금이자수입	1,447	1,447	1,607	160
임시적세외수입	-	-	19	19
기타수입	-	-	19	19
그외수입	-	-	19	19

지방행정제재 · 부과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부담금	44,683	44,683	44,683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71,617	71,617	79,566	7,949 (11%)
보전수입등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예치금회수	71,617	71,617	79,566	7,949

- 2024년 지출계획 변경내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초 (A)	1차변경	2차변경 (B)	증 감(B-A) (증감률)	
계			117,747	117,747	125,875	8,128 (6.9%)	
비용자성사업비(정책사업비) 소계			87,558	87,737	87,737	179 (0.2%)	
	도시재생기반시설 조성		87,558	87,737	87,737	179 (0.2%)	
	1	다동공원 조성사업	소 계	87,126	87,126	87,126	-
		시설비	87,108	87,108	87,108	-	
		감리비	15	15	15	-	
		시설부대비	3	3	3	-	
	2	세운 5-2구역 내 공공임대상가 건립	소 계	432	611	611	179 (0.2%)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32	611	611	179 (0.2%)	
행정운영경비			10	10	10	-	
	기금 관리비	사무관리비	10	10	10	-	
재무활동			30,179	30,000	38,128	7,949 (26.3%)	
	여유자금 예치	일반예치금	30,179	30,000	38,128	7,949 (26.3%)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다음 각 호의 기금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균형발전정책과 균형발전정책팀 김유림 (☎2133-8614)